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 11. 21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6. 11. 21

다. 상 정 일 자 :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96. 11. 26)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안병일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동세무담당 직원의 구분청 재비치와 관련한 구·동간의 정원상계 조정 사항과 기획실 및 부동산 관리계등 기구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보강등 정원을 일부 조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구 본 청 : (현) 435명 ⇒ (조정) 454명 ▷ 중 19명
- 의회사무국 : (현) 16명 ⇒ (조정) 18명 ▷ 중 2명(의정계 신설)
- 동 : (현) 278명 ⇒ (조정) 262명 ▷ 감 16명(동세무직 감소)
- 보 건 소 : (현) 46명 ⇒ (조정) 46명 ▷ 변동사항 없음
- 계 : (현) 775명 ⇒ (조정) 780명 ▷ 중 5명
(기획실장 1, 계장요원 2, 주전산기운영요원 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우리구 기획실 확대조정 및 환경보호과내 생활 공해계, 지적과내 부동산 관리계 그리고 의회사무국내 의정계 신설등 행정기구가 일부 개편조정됨에 따른 증원사항과 그동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던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구분청 재배치와 관련한 구동간 정원상계 조정과, 대민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전산기 운영요원 추가 배치 사항과 관련한 정원조정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